

# 영세율 매출명세서

년 제 기 ( 월 일 ~ 월 일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## 1. 제출자 인적사항

|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상호(법인명)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 ③ 성명(대표자) | ④ 사업장 소재지 |
| ⑤ 업태      | ⑥ 종목      |

## 2.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

| ⑦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⑧ 조문           | ⑨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 금액(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부가가치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1조           | 직접수출(대행수출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중계무역·위탁판매·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내국신용장·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국국제협력단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2조           |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3조           | 선박·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4조           | 국내에서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외국항행 선박·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국내 주재 외교공관, 영사기관,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,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⑪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5조제1항 제1호   | 방위산업물자 또는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5조제1항 제2호   |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5조제1항 제3호   | 도시철도건설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5조제1항 제3호의2 |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5조제1항 제4호   |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5조제1항 제5호   |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·축산업용·임업용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5조제1항 제6호   |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7조          |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1조의13       |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 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⑫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⑬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⑪+⑫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## 작성방법

이 명세서에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,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.

① ~ ⑥: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, 상호(법인명), 성명(대표자),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.

⑦ ~ ⑩: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⑪ ~ ⑬: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.